



#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

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 
**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** 받아야 합니다.



## 무엇이 달라졌나요?

• 변경 전	영업전 1회	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
• 변경 후	영업전 1회 + 2년에 1회	과태료 300만원 이하
• 교육대상	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	
교육시기	2016.01.20 이전 교육이수자 : 2018.01.20.까지 2016.01.21 이후 교육이수자 :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	
교육장소	전국 소방관서	

※문의 | 시·도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

•시행일 : 2016년 1월 21일

